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1998. 1.

제출자 :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도·소매업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의 개설방법과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제명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등”이라 함

나. “임시시장”을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 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로 정의함 (안 제2조)

다. “도·소매업진흥법제16조제2항”을 “유통산업발전법제16조제2항”으로 개정함 (제1조)

3. 개정근거

가. 도·소매업진흥법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법령개정

나. 유통산업발전법(1997. 4.10 법률제5,327호) 제16조 제2항

4. 조례안 : 별첨

5. 예산조치 : 필요 없음

- 첨부
1.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마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정기시장” 을 “정기시장등” 이라 한다.

제1조중 “도·소매업진흥법(이하 “법” 이라한다)” 을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한다)” 으로하고, “정기시장” 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중 “정기시장” 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으로 한다.

제4조제목중 “정기시장” 을 “정기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본문 및 제2항중 “정기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법제6조 규정에 의한 시장등의 개설자”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개설자”로 하고, 동조제2항제1호 “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를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이 취소된 때” 로 한다.

제6조제목 “정기시장의 운영·관리등” 을 “정기시장등의 운영·관리등” 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을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및 임시시장” 으로 하고, 동조제4항 중 “정기시장” 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으로 한다.

제7조제목 “시장개설자의 책무”를 “시장개설자등의 책무” 로 하고, 동조제1항 및 제2항중 “정기시장개설자”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개설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정기시장” 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으로 한다.

제9조제목 “정기시장개설대장의비치”를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개설대장의비치”로 하고, 동조중 “정기시장개설대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대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 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명) 서울특별시마포구정기시장의시설기준 및운영·관리등에관한조례	(제명)	정기시장등.....	정기시장등.....
제1조(목적) 이조례는 <u>도·소매업진흥법</u> (이하 “법” 이라한다)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내 정기시장개설의 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조례는 <u>도·소매업진흥법</u> (이하 “법” 이라한다)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관할구역내 정기시장개설의 시설기준및운영·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u>유통산업발전법</u> (이하 “법”이라한다)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기시장” 이라함은 법제2조제2호 규정에 따른 일정 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시장” 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정기적 또는 계절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임시시장”이라함은 일정구역안에서 다수의 수요자와 공급자가 당해시장의 개설자가 지정한 기간에 일시적으로 모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기시장 개설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제3조(적용범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제3조(적용범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정기시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계절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개설 하게 할수 있다.	제4조(정기시장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정기시장은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개설한다 다만, 계절적으로 개설되는 정기시장(이하“계절시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이를 개설 하게 할수 있다.	제4조(정기시장들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제4조(정기시장들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제4조(정기시장들의 개설 및 시설기준) ①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은.....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②정기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각호와 같다.</p> <p>1. ~ 2. (생략)</p> <p>③ (생략)</p> <p>제5조(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① (생략)</p> <p>1. 법제6조 규정에 의한 시장 등의 개설자</p> <p>2. ~ 3. (생략)</p> <p>② (생략)</p> <p>1. 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시장등의 개설허가가 취소된 때</p> <p>2. ~ 4. (생략)</p> <p>제6조(정기시장의 운영·관리등) ①구청장은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의 운영 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장관리인을 지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p> <p>②~③ (생략)</p> <p>④구청장은 정기시장을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업 또는 폐업일 30일전에 구보 및 정기시장 개설장소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p> <p>제7조(시장개설자의 책무) ①정기시장개설자 또는 시장관리인은 입주 상인들의 공동이익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1. ~ 6. (생략)</p> <p>②정기시장개설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업무규정 및 사업계획의 범위안에서 입주상인들로부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p>	<p>②정기시장 및 임시시장.....</p> <p>1. ~ 2.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조 (계절시장 개설자의 지정기준 및 지정의 취소) ① (현행과 같음)</p> <p>1.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대규모 점포 개설자</p> <p>2. ~ 3.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목이 취소될때</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6조(정기시장등의 운영·관리등)①..... 정기시장(계절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다) 및 임시시장.....</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구청장은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을.....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p> <p>.....</p> <p>제7조(시장개설자 등의 책무) ①정기시장 및 임시시장 개설자</p> <p>.....</p> <p>1.~ 6. (현행과 같음)</p> <p>② 정기시장 및 임시시장개설자.....</p> <p>.....</p> <p>.....</p>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8조(관리비 등의 징수) ①구청장은 <u>정기시장</u>의 관리인, 계절시장의 개설자로 지정 받은자로 하여금 동시장의 입주자로부터 그 시장부지, 점포 및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하게 할수 있다.</p> <p>② (생략)</p>	<p>제8조(관리비 등의 징수) ①.....<u>정기시장</u> 및 <u>임시시장</u>.....</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9조(<u>정기시장</u>개설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u>정기시장</u> 개설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p>제9조(<u>정기시장</u> 및 <u>임시시장</u>개설대장의 비치) 구청장은 별지 서식에 의한 <u>정기시장</u> 및 <u>임시시장</u>개설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